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2020. 1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1. 개요

1 추진배경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15일+a)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에 적용
 - * ('20.1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부대의견***에 지원방안 마련 명시
 -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안착을 위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부담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지원정책 우대 추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관련 지원방안>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기술보증 우대, 농·식품분야 인건비지원, 관광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정책자금) 관광기금 및 스포츠기업 경영자금 융자 우대▪ (구인지원)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고용센터 일자리 매칭▪ (기타) 일터혁신 컨설팅 우선선정,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조기전환 사업(장) (5~2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조달)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조달 시 가점▪ (정책우대)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가점, 산재보험료 경감 등

* 우대지원 내용은 소관부처의 정책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관계부처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전환 사업(장)에 확인서 발급

2 적용대상

-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법정시행일(30~299인 '21.1월, 5~29인 '22.1월)에 맞추어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5~299인 사업(장) 중,
 -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한 사업(장)
- (조기전환 사업(장)) 5~29인 사업(장)으로서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 중,
 -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II. 신청방법

- (주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한 5~299인 사업(장)의 사업주
- (방법)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 신청서」(붙임1) 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 조기전환 사업(장)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시행일'란에 있는 '조기전환 사업(장) 확인 신청'에 체크하여 제출
- (신청기간) 30~299인 사업(장)은 '21.1월~6월까지 신청, 5~29인 사업(장)은 '21.1월~'22.6월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요건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2)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 3) 공휴일 유급휴일 운영 및 5일 이상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한 사업(장) 내에 다수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취업규칙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취업규칙 변경 상세내용은 취업규칙 변경신고 내역으로 확인 (취업규칙 변경 신고 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에 신고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기재)
 - 단체협약 제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 전/후의 단체협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유급휴일 전환 전/후의 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 기타 유급휴일 운영 및 5일 이상 전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4) 상시근로자수 관련 사업주 확인서(유급휴일 조기전환 확인을 신청하는 5~29인 사업(장)에 한함)
 - * 조기전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2)

Ⅲ. 확인서 발급 요건

1.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또는 그에 앞서 전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2. 18.3.20.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① 전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15일+a)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1일 ▸ 설·추석 연휴 각 3일 ▸ 부처님오신날 ▸ 기독교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공휴일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 없이 휴일로 운영하고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 지급

- *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 운영으로 인정
- *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음(임금 감소없이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

- 법정 시행일 이전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유급휴일 전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준수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전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참고2 참조)

* 취업규칙 내의 문구 예시(○):

- 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②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 각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교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대체공휴일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 예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x)

②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 전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에서 '18.3.20. 이후 법정 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 법정 시행일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환한 경우에도 총 전환 일수가 5일 이상이면 해당(예: '18년 3일 전환, '19년 4일 전환 등)
- 각 공휴일을 1일로 계산하며, 대체공휴일, 선거일 등 불규칙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실제일수와 관계없이 각각 1일로 계산
 - * 예: '21년에 선거일은 없으나 취업규칙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했다면 1일로 산정, 대체공휴일은 한 해에 여러 날 있을 수 있으나 1일로 산정
 - 취업규칙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존에 해당 사업(장)의 관행상 대부분을 이미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어, 실제 전환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발급대상이 아님

③ 유급휴일 조기 전환 (5~29인 조기전환 사업(장)에 한함))

- 조기 전환 여부는 법정 시행일보다 앞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인정

< 예 시 >

- 5~29인 사업(장)이 '21.9.15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공휴일 중 6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하여 전체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하였다면,
 - 1) 전환한 공휴일이 ①1월1일(1.1) ②3.1절(3.1) ③어린이날(5.5) ④부처님오신날(5.19) ⑤기독탄신일(12.25) ⑥대체공휴일인 경우
 - '21년에 조기 전환.운영되는 유급휴일은 1일(기독탄신일)이므로 조기전환 아님 ('21.9월 이후 대체공휴일이 없으므로 대체휴일은 산정하지 않음)
 - 2) 전환한 공휴일이 ①3.1절(3.1) ②③④ 추석연휴 3일(9.20~22) ⑤개천절(10.3) ⑥기독탄신일(12.25)인 경우
 - '21년에 조기 전환.운영되는 유급휴일은 5일이므로 조기전환 사업(장)으로 인정 (개천절은 일요일, 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이와 상관없이 각 1일로 산정)

- “상시근로자수 관련 사업주 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기 전환 사업(장) 확인서 미발급
 - '20.12월부터 전환 적용 일자가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 30인 이상이었던 달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조기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III. 결과 통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처리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필요 시 14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지서 발급 (확인서 미발급)
▶ 허위신고 또는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반려 통지

* 조기전환 사업(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조기전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유급 휴일 전환 사업(장)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가 발급됨

- 확인서 발급 이후, 허위 신청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 발급 취소 및 반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실제 휴일로 운영하지 않거나, 휴일가산수당을 미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

- 허위로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정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제도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재요령

⑤ 상시근로자 수는 상용·임시·일용 등 구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 달의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고

⑧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또는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신할 수 있는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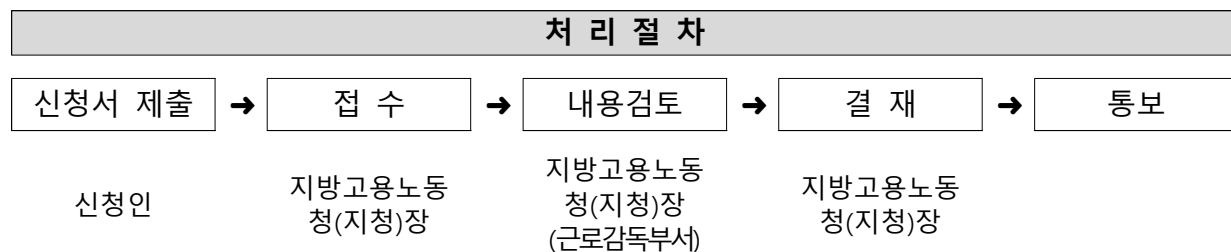
⑩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적용하기로 한 일자를 말합니다.
(’20.10월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1.1.1부터 적용하기로 한 경우, ’21.1.1 기재)

⑪ 전환 전과 후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관공서 공휴일을 표시합니다.
(유급휴일 전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전환 전”에는 최초 전환 이전의 유급휴일을 적고, “전환 후”에는 그동안 전환된 유급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

⑫ 유급휴일 전환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접수 번호 및 접수일자를 기재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법정 시행일보다 5일 이상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한 5~29인 사업(장))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⑧에서 조기전환 신청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4.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 - 호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5~29인)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근로자수	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정 시행일		유급휴일 전환 적용일	
귀 사는 5일 이상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하여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4항에 따른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일에 앞서) 관공서 공휴일 전체를 유급 휴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동 확인서 발급 이후, 허위 신청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 발급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단, 우대사업별로 효력인정 기간을 달리 명시한 경우 우대사업별 효력인정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각 우대사업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우대사업이 변경·폐지될 수 있으며, 해당 우대사업에서 별도로 자격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음)			

참고1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1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1. 재정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고용부>

○ 공모형 고용장려금(6개 사업) 신청 시 가점(5점) 부여

<공모형 고용장려금 현황>

고용 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1~2년간 월40~80만원,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비용(월 최대40만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국내복귀 기업 사업주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2년간 월40~8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한 사업주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월40~80만원
고용 안정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6개월~2년 근속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전환근로자 1인당 1년간 임금증가 보전금(월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월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1년간 520만원 지원 * (주 1~2회) 1주당 5만원, (주 3회 이상) 1주당 10만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선정 시 우대 지원(가점부여)<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주요내용>

- (개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 0.7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2(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4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문의처	042-388-085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농·식품분야 인력지원 우대<농림부>

- 식품 및 외식기업 청년인턴십('20년 400명),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우선 지원

* 3개월은 월 9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6개월은 월 100만원 한도

문의처	061-931-072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우대 지원('20년 37억원)<문체부>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문의처	02-729-9463 (한국관광공사)
-----	----------------------

2. 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지원제한 완화 및 기술보증 우대 등<중기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현행 5년 3회)을 한시적으로 완화('21년)하여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문의처	1357 (중기부)
-----	------------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 확대(85→90%) 및 보증료 감면(0.3%p)

문의처	1544-1120 (기술보증기금)
-----	--------------------

관광기금 및 스포츠 운전(경영)자금 용자 우선 배정<문체부>

*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문의처	02-2079-2446~7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시용자지원센터)
	1566-457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자 콜센터)

3. 구인 지원

구인이 어려운 제조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2년)<고용부>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

* 현재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업종·지역은 기존 상향비율에 20%를 추가 상향)

○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최대 5명)

<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제조업 규모별 고용허용한도(E-9) 상향(안) >

내국인 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연간 신규고용한도 (총고용한도內)	
	20% 상향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40% 상향 (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업종or지역)	60% 상향 (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업종&지역)		내국인 채용 지
11 ~ 30명	10명	12명	14명	16명	4명
31 ~ 50명	12명	14명	17명	19명	
51 ~ 100명	15명	18명	21명	24명	5명
101 ~ 150명	20명	24명	28명	32명	
151 ~ 200명	25명	30명	35명	40명	6명
201 ~ 300명	30명	36명	42명	48명	

+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	--------------

□ 고용센터 일자리 우선 매칭<고용부>

- (온라인) 워크넷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구인·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
- (오프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지원 순회 출장센터 등 지원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	--------------

□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부여<중기부>

문의처	1899-30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4. 기타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고, 특히 어려움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에 대한 컨설팅 확대 <고용부>

* 8~21주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문의처	02-6021-1214 (노사발전재단)
-----	-----------------------

□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 부여<중기부>

문의처	042-481-6843 (중소벤처기업부)
-----	------------------------

-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부>

* 2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
 ⇒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20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	--------------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노무전문가 무료상담(2~3회 기업 방문 및 상담) 우선 지원<고용부>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	--------------

2 5~29인 사업(장) 조기도입 추가 인센티브

※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 추가 인센티브 부여

- (공공조달 가점)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기재부·행안부>,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가점 부여<중기부>

문의처	044-205-3784 (행안부 회계제도과)
	042-481-4434 (중기부 판로정책과)

- (정책자금 우대)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공휴일 조기도입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 우대<금융위>

<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

기관명	지원 대상	금리인하
산 은	고용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산업, 고용창출인증기업, 세제상 고용확대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5%p
기 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 ~ 1.0%p
수 은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 이상인 기업	△0.5 ~ 0.9%p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p

문의처	1588-1500 (산업은행)
	1588-2588 (기업은행)
	02-3779-6114 (수출입은행)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적용 (0.2%p 차감)<금융위>

문의처	1588-6565 (신용보증기금)
-----	--------------------

- (외국인력 가점)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2점)<고용부>
* "노동시간 조기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가점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	--------------

- (산재보험료 할인)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 경감<고용부>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업장)

문의처	1644-4544 (안전보건공단)
-----	--------------------

- (관세조사 유예) 관세조사 대상에서 1년간 제외<관세청>
* 다만, 4년 이내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받은 기업 등은 지원 제외

문의처	042-481-7973 (관세청 법인심사과)
-----	--------------------------

- (포상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심사 시 가점<고용부>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	--------------

1. 올바른 사례

- 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함께 명시합니다. (필수사항)
- ②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휴일대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 ③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있으므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하는 공휴일에서 일요일이 제외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④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 각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명시하려면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잘못된 사례

- 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 대체공휴일이 빠져있습니다.
- ②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3·1절, 광복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 개천절, 설 및 추석의 전날 및 다음날이 빠져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